의 안 검 토 보 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직할시장

2. 건　　명 :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및수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4. 12.

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및수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4. 12.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및수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4. 12. 1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 12. 2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본 안건의 수정안은 1994. 12. 10 제출되어 1994. 12. 14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현행 대전직할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 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21개의 조례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교통·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행 21개의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함.

나.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시세를 면제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안 제2조)

(2) 국가유공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3조)

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와 음성나환자 및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

(1) 1급 내지 3급의 지체장애인과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2,000씨씨이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함. (안 제4조)

(2)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며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5조)

(3)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50% 경감함. (안 제6조)

라.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기자재 확충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시세를 면제 또는 경감함.

(1)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7조)

(2)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건설기계·선박·입목 및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8조)

(3)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50% 경감함. (안 제9조)

마.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지원하고 주차장건설을 촉진하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고자동차거래질서확립등 교통정책지원을 위하여 시세를 경감함.

(1)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0조)

(2)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없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5년동안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감면기준이 되는 주차장수입금액을 당해 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함. (안 제11조)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는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로 경감함. (안 제12조)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13조)

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정액부과에서 배기량별부과로 전환됨에 따른 세부담의 일시적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 50% 정도의 자동차세를 감면함. (안 제14조)

사. 주택건설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가 건축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과 주택조합이 건축한 조합주택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

(1)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등이 60제곱미터이하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5조 제1항)

(2) 주택건설사업자나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한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6조 제1항)

(3) 주택조합이 건축한 85제곱미터이하의 조합주택과 동조합,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7조 제1항)

(4) 주택건설사업자·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4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함. (안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아.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세를 면제함.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개발사업계획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8조)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초고시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9조)

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를 면제함. (안 제20조)

차. 도시가스사업의 기반확충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함. (안 제21조)

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안 제22조)

타.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이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세계박람회장에서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과세하고자 함. (안 제23조)

파.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부칙제2조)

3. 검 토 의 견

본 안건은 대전직할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 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더 연장하고 이미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현행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1. 조 례 현 황

◇ 현행 감면조례 : 총 21개

○ '94년말 종료 : 16개

○ '94년 이후 : 2개

- EXPO 기념재단 - '96. 12. 31
- 고 속 철 도 - '98. 12. 31

○ 적용시한이 없는 조례 : 3개

- 음성나환자
- 지정문화재
- 종교단체의료업

◇ 단일 통폐합 제정 조례 : 19개

◇ 현행 폐지 조례 : 2개

- 새마을사업에 대한 시세감면조례
-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감면조례

□ 먼저 현행 시세감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조례가 16개, '94년 이후인 조례가 2개, 그리고 적용시한이 없는 조례가 3개등 모두 21개 조례가 개별로 규정되어 있음.

금번 통폐합안은 총 21개 개별조례중 사실상 감면목적이 상실된 새마을 사업에 대한 감면조례와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나머지 19개 조례에 대하여 1개 조례로 단일화 하려는 것임.

그러나 본 통합안은 감면대상의 개별 성격으로 볼 때 적용시한을 동일하게 한 것은 세제시책상 다소 불합리한 면도 있다고 보겠지만 세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봄.

2. 현행 감면조례 주요변경 내용

현 행 조 례	재정안 변경(추가) 내용	감면세목	변경 (추가) 사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감면조례	- 주택면적 확대 · 현행 60㎡이하 (18평) → 85㎡이하로 확대(25.7평)	취 득 세 등 록 세	다른 감면대상과 형평유지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 감면대상에 시각장애인 1~4급 추가 - 배기량 · 현행 1500cc → 2000cc로 확대	자동차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다른 감면대상과 형평유지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	- 주차장 수입금액 완화 · 현행 공시지가의 7/100 → 3/100으로 완화	취 득 세 등 록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다른 감면대상과 형평유지
주택건설에 대한 감면조례	- 다세대주택 범위 · 현행 10세대이상 → 5세대이상으로 조정	취 득 세 등 록 세	다세대주택 건설 지원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현행없음)	- 도시가스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타시도와 형평유지 ※ 현재 우리시만 미시행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조 례	감 면 세 목	대 체 조 문	변경사유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면제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제2조 제2항 (주택면적 현행 60㎡ → 개정 85㎡)	다른 감면 대상과 형평 유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3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례	자동차세 면제	제4조(시각 1~4급추가 배기량 현행 1500cc → 2000cc)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5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도시계획세, 공동 시설세 면제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7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례	도시계획세 ⇒ 1/1000 세율 적용	제9조	
시내버스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조례	등록세 면제	제10조	
주차장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11조 (공시지가의 7/100 → 3/100)	다른 감면 대상과 형평 유지

현 행 조 례	감 면 세 목	대 체 조 문	변경사유
매매용 중고자동차세 대한 감면조례	취득세 면제, 등록세는 1000분의 10 세율 적용	제12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13조 (적용시한 '98년 → '97년)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기간 형평유지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자동차세 50% 수준 감면	제14조	
주택건설에 대한 면제 조례	취득세,등록세,면제 또는 50% 감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도시개발에 대한 면제 조례	취득세,등록세 면제	제18조, 제19조	
지방공사에 대한 면제 조례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주민세 면제	제20조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조례	취득세,등록세 30% 감면	제22조	
엑스포기념재단등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23조 (적용시한 '96년 → '97년)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기간과 형평 유지

口 다음은 현행 감면조례의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음.

첫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감면조례로써 면제대상인 주거용 부동산의 면적을 타감면대상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였음. (안 제2조 제2항)

둘째,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례로써, 감면대상에 시각장애인을 추가하고 면제대상 자동차의 배기량을 현행 1500cc에서 2000cc로 확대하였음. (안 제4조)

셋째,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로써 주차장 수입금액의 완화를 위해 현행 공시지가의 100분의 7를 100분의 3으로 완화하였음. (안 제11조 제2항)

넷째, 주택건설에 대한 감면조례로써 다세대주택 건설지원을 위하여 다세대주택 범위를 현행 10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였음.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다섯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조례로써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토록 하였음. (안 제21조)

다만, 본 도시가스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92년 12월 당의회에서 감면기간 연장의 건으로 심의되었던 사항이며,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보다는 사인의 영리추구에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적용시한 만료로 자동 폐지되었던 사항임.

□ 끝으로 본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면제 적용시한이 변경된 조례가 있는데 '96년 12월 31일까지인 대전엑스포 기념재단의 면제조례가 1년 더 연장되었으며(안 제23조),

'98년 12월 31일까지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면제조례는 1년 단축되었음. (안 제13조)

그리고 안 제6조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당초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 경감토록 하였으나,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개정안

제291조가 등록세는 과세 전환하고 나머지는 과세면제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재 수정되어 이를 변경한 것임.

금번 대전시의 시세감면 조례안은 분야별 개별조례를 단일화하는 동시 지방세 감면의 폭을 일부 조정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본 조례에 새로 포함된 것이 주요 변경 내용이라고 보겠음.